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40
----------	-------

발의연월일 : 2025. 11. 25.

발 의 자 : 곽상언 · 이개호 · 김교홍
김동아 · 박수현 · 조정식
윤종균 · 박지원 · 서일준
복기왕 · 박용갑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주택 등)에 대해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 전기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주거시설의 경우 주거시설과 달리 전자고지 등으로 사전 안내할 수가 없고, 특히, 사업장은 업종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안전점검 주기별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안전점검을 위해 사업장을 사전안내 없이 방문함에 따라 주민 불편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비주거시설에 대한 업종이나 국세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장 전기안전 점검 관련 비효율을 개선하는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자료의 요청) ① 안전공사는 제12조제1항 및 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인적사항
 2.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자 정보
 3.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 제공 요청 범위와 필요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중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발급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3(자료의 요청) ① 안전</u> <u>공사는 제12조제1항 및 14조제</u> <u>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u> <u>료를 시·도지사, 시장·군수·</u> <u>구청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u> <u>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u> <u>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u> <u>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u> <u>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u> <u>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1. 「주민등록법」에 따른 인적</u> <u>사항</u> <u>2.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u> <u>자 정보</u> <u>3.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u> <u>따른 등기사항증명서</u> <u>② 제1항 각 호의 자료 제공</u> <u>요청 범위와 필요한 절차 등은</u>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u> <u>료 중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u> <u>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u> <u>따른다.</u>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
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발급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
수료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